

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9. 1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내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(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,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)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참조
- 조 례 안 : 붙임참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- 입법예고 : 2009. 09. 08 ~ 09. 28(21일간)

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내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에 따라 시설물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단체”란 어린이, 학생, 군인 또는 어른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.
2. “시설물”이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(이하 “백룡동굴”이라 한다),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(이하 “생태관”이라 한다),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을 말한다.
3. “관람료”란 백룡동굴과 생태관을 탐방하기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3조(개관 및 휴관) ① 시설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.

②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월 1일, 설날, 추석
2. 매주 월요일. 다만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.
3.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·보수를 위하여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정하는 휴관일
4.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람시간) ① 생태관 및 백룡동굴의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.

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관람료) ①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. 다만,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사전결제 할 수 있다.

③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.

④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.

제6조(관람료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

1. 국민,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3.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
4.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7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
9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10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2장 사무의 위탁

제7조(위탁관리)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법인·개인 또는 단체에게 관광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·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,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익시설물의 사용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1,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.

제8조(수탁자의 선정)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시설물 관리·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·물품·장비 등 보유현황
2.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
3. 시설물과 관련한 책임능력 및 전문성(경력)
4.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
5. 시설물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
6. 기타 시설물과 관련한 사항 등

제9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,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.

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,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.

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협약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⑤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제11조(협약의 해지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·수탁협약을 해지하거나 시설관리 업무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1. 제10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때
2.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3.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3조(예산 및 운영의 지원)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3장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

제14조(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)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간사는 동강생태체험팀 담당주사로 한다.

③ 위원은 군의원 1명, 관계공무원 4명, 관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제1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, 재정부담능력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하여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협약체결 등)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·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수탁기관·단체명
3. 위탁대상 재산·사무 및 그 내용
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사용·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
6.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
7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장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등

제17조(관람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광지 시설물 입장을 거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.

1. 정신이상자 및 술에 취한 자
2. 위험물이나,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
3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
4. 백룡동굴은 체험식 관람방법을 취하므로 6세이하의 어린이와 65세이상 노인의 입장을 제한한다. 단, 동굴관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인정 하에 허가할 수 있다.
5.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8조(관람료의 환불) ① 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
2. 제17조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 경우

3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4. 생태관 또는 백룡동굴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5.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

제19조(개방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시설물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. 단,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
2. 관광지의 입장, 관람 및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
3. 그 밖에, 군수가 시설 개·보수 등 시설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20조(매표 및 검인) ①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 납부하며 군수가 지정한 매표소 직원이 징수한다. 단, 인터넷을 통해 사전 결제한 경우 매표소의 직원에 의해 본인 확인을 마친 후 관람권을 교부한다.

제21조(변상조치) ① 관람자와 시설물사용자는 관광지내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② 관람자가 관광지내 전시물을 오손, 파손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제22조(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)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
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3조(준용)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(제5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개 인	단 체
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0,000	7,000
어 른	15,000	10,000

※ 평창군민은 단체할인 기준 적용.

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(제5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개 인	단 체
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,500	1,000
어 른	2,000	1,500

※ 평창군민은 단체할인 기준 적용.

관계 법령 발췌

□ 관광진흥법

제67조 (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)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, 그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,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·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·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·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.

□ 장애인복지법

제2조 (장애인의 정의 등) 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“신체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
2. “정신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

제6조 (등록 및 결정) ①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,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,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,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. 이 경우 제4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,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

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[개정 2009.2.6]

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,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"보훈심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28][[시행일 2008.6.29]]

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

제6조 (등록 및 결정) ①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"보훈심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한다. 다만,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28]

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6조 (적용대상)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. [신설 2002.1.26]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[개정 2002.1.26, 2007.1.3]

1. 「국가보안법」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
2.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
3.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

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[개정 2002.1.26]

2.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

④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[개정 2002.1.26]

[본조제목개정 2002.1.26]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6조 (수급자의 범위)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. [개정 2008.2.29 제8852호(정부 조직법)]

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